유지보수·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화성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화성시청

○ 제조사·공급사 : ㈜누리콘

○ 대상 항목 : **통합운영센터 상황판 시스템 정기점검, 유지보수**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화성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유지보수·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유지보수·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대상 항목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유지보수·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유지보수·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400,000원(VAT별도)으로 한다. 단 본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유지보수·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보수·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유지보수·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9 월 10 일

발주기관명 화성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누리콘 (인)

유지보수·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화성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화성시청
○ 제조사·공급사 : ㈜국제통신공업경인본부
○ 대상 항목 : UPS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통합운영센터(2대) / 동탄허브센터(2대) / 무인통신국사(13대) 등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화성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유지보수·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유지보수·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대상 항목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유지보수·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유지보수·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2,000,000원(VAT별도)으로 한다. 단 본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유지보수·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보수·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유지보수·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9 월 10 일

발주기관명 화성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국제통신공업경인본부 (인)

유지보수·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화성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화성시청
○ 제조사·공급사 : ㈜세기공조산업
○ 대상 항목 :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정기점검·유지보수**
○ 대상 장소 : 통합운영센터, 동탄허브센터, 무인통신국사(13개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화성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유지보수·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유지보수·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대상 항목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유지보수·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유지보수·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9,900,000원(VAT별도)으로 한다. 단 본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유지보수·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보수·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유지보수·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9 월 10 일

발주기관명 화성시장 (인)

제조사·공급사명 ㈜세기공조산업 박 상 홍 (인)